

■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[별표 2] <개정 2024. 5. 7.>  
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기준(제13조제1항 관련)

구 분	지 정 기 준
1. 국보·보물 및 국가민속문화유산의 보호구역	<p>가. 해당 문화유산의 최대 돌출점에서 수직선으로 닿는 각 지점을 서로 연결하는 선에서 10미터부터 최대 100미터까지(해당 문화유산이 사찰, 사지, 서원, 향교, 관아, 객사, 회랑지 등 문화 유적지와 연결될 경우 그 유적지 외곽 경계에서 10미터부터 100미터까지)</p> <p>나. 그 밖에 해당 문화유산 보호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</p>
2. 사적의 보호구역	<p>가. 선사시대 유적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) 선사시대 유적 중 역사적 가치가 규명되지 아니한 유물이 흩어진 지역</li> <li>2) 선사시대 유적과 역사문화환경적으로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구역으로서 그 보호에 필요한 최소한의 구역</li> </ol> <p>나. 정치·국방에 관한 유적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) 궁터: 궁궐의 외부지역 중 해당 사적과의 관련성 및 경관보호 등을 고려하여 보호에 필요한 최소한의 구역</li> <li>2) 성터: 성곽의 외부지역 중 전술적 측면을 고려하여 그 외곽 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의 구역</li> <li>3) 봉수대, 관아, 병영 등: 해당 사적에 수반된 자연지형을 고려하여 보호에 필요한 최소한의 구역</li> <li>4) 전적지: 그 성격과 특성 등을 고려하여 보호에 필요한 최소한의 구역</li> </ol> <p>다. 산업·교통·주거생활에 관한 유적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) 역사(驛舍), 가마터: 해당 사적과의 관련성 및 경관보호 등을 고려하여 보호에 필요한 최소한의 구역</li> <li>2) 교량, 제방, 정원과 연못, 우물, 수중유적 등: 역사문화환경적으로 해당 사적과 관련성이 있는 보호에 필요한 최소한의 구역</li> </ol> <p>라. 교육·의료·종교에 관한 유적: 현재의 여건을 고려하여 해당 사적의 외부지역 중 경관보호 등에 필요한 최소한의 구역</p> <p>마. 제사·장례에 관한 유적: 현재의 여건을 고려하여 경관보호 등에 필요한 최소한의 구역</p> <p>바. 인물·사건 등의 기념에 관한 유적: 현재의 여건을 고려하여 그 보호에 필요한 최소한의 구역</p> <p>사. 그 밖의 사적의 보호구역: 그 보호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</p>
3. 보호물	<p>가. 지상의 건조물 또는 그 밖의 시설물은 보호책·담장 또는 그 밖에 해당 문화유산의 보호를 위한 시설물</p> <p>나. 동종(銅鍾)·비석·불상 등은 종각(鍾閣)·비각(碑閣)·불각</p>

	(佛閣) 다. 그 밖의 문화유산은 그 보관되어 있는 건물이나 보호시설
4. 보호물이 있는 경우의 보호구역	가. 보호물이 건조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 추녀 끝 또는 이에 준하는 부분, 그 밖에 최대 돌출점에서 수직선으로 닿는 각 지점을 연결하는 선에서 바깥으로 5미터부터 50미터까지의 구역 나. 보호물이 보호책·담장 등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하부 경계에서 2미터부터 20미터까지의 구역